

무계획적인 출하가 사료급여에 차질을 주고 있다

□ 취재/김동진 기자



△적절한 약품사용, 효과적인 사료급여는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에 필수

우 리나라 육계산업은 '83년 1인당 1년동안 닭고기 소비량이 3.0kg이던 것이 10년 뒤인 '93년에는 5.8kg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이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오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소비량으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닭고기의 수출입이 자

유화 되어지고 국제수준에 맞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사양가들은 이에 발맞춰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위생적이고 맛있는 닭고기 생산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육계사양관리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약품 사용, 비효과적인 사료급여 등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는 물론 비위생적인 닭고기의 시장유통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보사부에서는 지난 '87년 12월에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을 고시하여 '89년 5월부터 축산물에 대한 위생법을 강화하여 왔으며 '90년 12월 1일 이후부터는 검사결과 잔류허용한계치를 넘는 축산물에 한해서는 판매를 금지하게끔 정해 놓고 있다.

현재 사양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출하기(휴약기)사료를 적정기간을 준수하여 급여하는 농가가 계약(계열화, 군납 등) 주문 농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며, 또한 전기사료를 출할때까지 급여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닭성장애 맞는 사양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현재 사양관리의

문제점으로 는

출하기(휴약기)

사료를 적정기간

준수하는

농가가 적으며,

전기사료를 출할때

까지 급여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사양관리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음을 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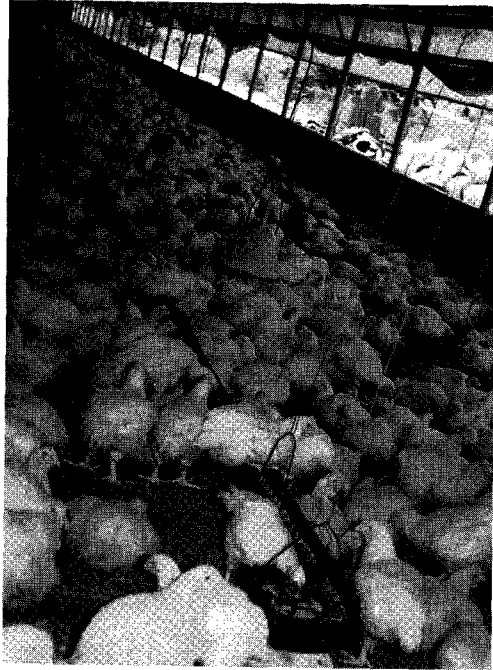
육계사료의 경우 지난 '93년 8월 2일 변경된 사료관리법(농림수산부고시 제 1993-34호)에 따르면 공정규격에서 사료의 명칭과 범위는 육계전기(0~3주), 육계후기(4주이상), 육계출하기(출하 7~10일전)로 정하였으며 사료 제조업체는 이외에 다른 것을 등록 생산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변경 이전에는 육계전기(0~3주), 육계중기(4~6주), 육계후기 I (7~9주), 육계후기 II (출하 7~10일전)으로 되어 있었으나 육종의 발달, 사양관리 기술 향상, 닭고기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출하일령이 짧아짐에 따라 현실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보면 육계후기 II는 출하기 사료와 동일한 휴약기 사료를 의미하며 이는 육계후기 사료에서 각종 약품 첨가제를 함유시키지 않은 사료로 영양성분은 육계 후기사료와 동일하다.

사료의 영양소 요구량을 보면 성장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성장초기에는 에너지보다 단백질 요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후기에는 에너지 요

▷ 출하 전 7~10일 전에는 반드시 휴약기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구량이 전기사료보다 높게 요구되고 단백질 요구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구성되어 있다.

사료급여는 육계의 성장에 따라 적절한 급여기간을 엄수하면서 사양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실제 사양농가에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다음에서 알 수 있다.

이는 1만수 사육시 42일령에 1.8kg을 키우는 농가에서 전기, 후기, 출하기 사료를 교체 급여하였을 때 사료 급여 비율은 26(7.2톤) : 45(12.4톤) : 29(17.7톤)의 비율로 나타나야 하는데, 지난 1~4월까지 사료생산 실적에서는

전기 (213,307천톤), 후기 (139,049천톤), 출하기(248천톤)로 그 비율은 60 : 39 : 1 정도로 나타나 전기사료의 장기급여와 휴약기 사료의 급여감소가 뚜렷하여 사료 급여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휴약기

사료는 급여가 극히 미미하여 닭고기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료회사에 따르면 보통 육계사료에 사용되는 항생제는 마이크로라이드 계통으로 분자량이 커서 체내로 흡수가 되지 않는 약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콕시딴제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질병예방수준으로 제조되고 있는 실정이라 휴약기간을 엄수해 급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농장에서 급여하는 일부 항생제 등 약제는 잔류기간이 상당시일 되는 경우가 있어 휴약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특히, 휴약기 사료를 급여해야 됨을 강조하지만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주문이 없어 생산라인이 있으면서도 생산을 못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고 있다.

또한 사양가들은 사료교체로 인한 질병발생, 증체율 감소,

표1. 사료급여 방법에 따른 사료비

단위(원)

구 분	전 기	후 기	출하기	계
정상적사료급여(A)	1,735,140	2,936,920	1,810,410	6,482,470
출하기사료생략(B)	1,735,140	4,786,180	-	6,521,320
전기사료만급여(C)	6,601,760	-	-	6,601,760

※ 가격 : 전기(242원/kg), 후기(238원/kg), 출하기(233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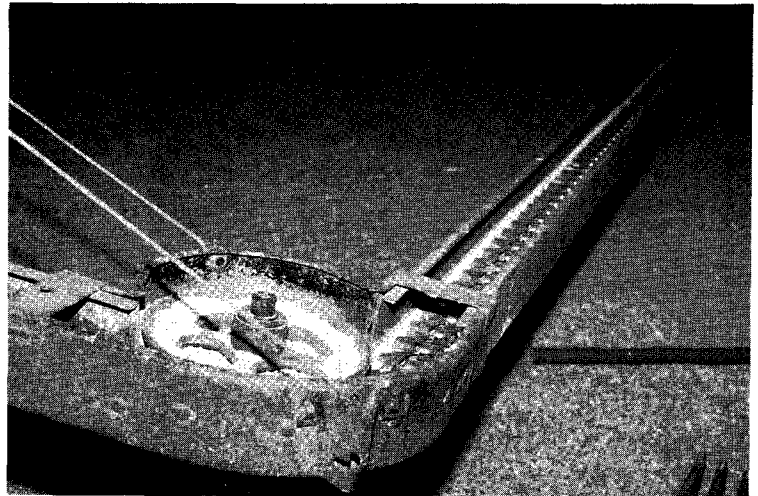
기간 : 전기(0~3주), 후기(4~5주), 출하기(6주)로 급여시

각종 스트레스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로 휴약기 사료를 기피하고 있으며 삼계, 세미, 얼치기, 하이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문화가 가격변동과 어울려 무계획적인 출하를 유도하고 있는데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1은 전기, 후기, 출하기 사료를 1만수 사육시 42주령까지 사료를 규칙적으로 급여하는 농가(A), 휴약기사료를 생략하는 농가(B), 전기사료만은 출하기까지 급여하는 농가(C)를 가정하여 사료비를 산정해 본 것이다.

사료비는 국내 배합사료 회사중에서 한곳을 뽑아 농장판매 가격을 적용시킨 것이며, 휴약기 사료는 후기사료에서 약품첨가비 5원을 뺀 것이다.

표에서 보면 정상적인 급여를 한 농가가 전기사료만을 급여한 농가보다 사료비는 절감할 수 있으나 농가들 사이에서는 사료교체로 인한 폐사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수익이 낮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정상적인 급여 프로그램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료구입시 급여하던 사료와 새로 급여할 사료의 배합비율의 변경, 즉 전기, 후기 사료의 갑작스런



△급여기에 남아있는 사료는 완전히 청소하여 부패를 막아야 한다.

변경은 성분, 맛, 입자크기 등 품질의 차이로 잘 먹지 않으며 생리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2~3일간 서서히 섞어가며 급여한다면 이러한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오히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학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휴약기간이 되면 사료용, 계사,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출하기 사료를 반드시 급여하여야 한다.

또한 약제를 사용함에 있어 질병예방, 치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첨가제 및 약제사용은 사양관리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현실이기 때문에 약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기에 적량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축산물 잔류허용기준을 보면 닭고기 경우 항생물질이 특히 규제대상에서 문제시되고 있어 스트렙토 마이신, 클로람 페니콜, 페니실린, 하이그로 마이신B 등은 출하전에 휴약기간을 반드시 엄수해 사용하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이제는 안전한 양계산물 생산을 위하여 힘써야하리 만큼 동물약품 제조업소, 배합사료 제조업소, 사양가 등은 닭고기 품질향상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사양가들은 각각의 농장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예방 프로그램과 사양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을 함으로써 국제화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